

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개정 고시 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212호, 2005. 7. 8)

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표 제2호(분야별 평가방법) 가목[감리자(감리회사)] 라.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 및 산정방법중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, 건설기술개발실적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건설기술개발실적(1.0점) :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
 -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: 건당 0.5점
 - ※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,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.
 - 위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,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
 -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,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

구 분	3년미만	3년 이상 6년 미만	6년 이상 10년 미만
특 허	100%	80%	60%

-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·건축·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

-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(1.5점) :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(건설기술개발 투자액/건설부문 총매출액)에 따라 부여
 -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, 등록결정을 양수·양도 또는 대여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(금액)으로 인정함
 -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(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, 교육훈련비, 개발비 등)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,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
 -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
 - 배점기준

구분	3% 이상	3.0% 미만 2.5% 이상	2.5% 미만 2.0% 이상	2.0% 미만 1.5% 이상	1.5% 미만 1.0% 이상
점수	1.5	1.2	0.9	0.6	0.3

-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“지정증명서와”를 “지정증명서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 증명서와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기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건설기술개발실적 및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)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.